

예산총칙

201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10,403,030 | 9,312,091 |
| 일반회계 | 272,866,081 | 8,185,982 |
| 특별회계 | 37,536,949 | 1,126,108 |
| 기타특별회계 | 37,536,949 | 1,126,108 |
| 상수도특별회계 | 9,644,331 | 289,33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786,736 | 23,602 |
|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1,904,189 | 57,126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638,182 | 19,145 |
|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| 13,069,097 | 392,073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301,091 | 9,033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16,012 | 480 |
| 청사건립특별회계 | 11,177,311 | 335,319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639,02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직무수행경비
3. 법정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공익근무요원보상금)
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5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금(세),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